

[]휴업

[]폐업

[]영업재개

통신판매업

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일	
신고인	상호		신고번호		
	소재지		전화번호		
	대표자의 성명 (서명 또는 인)		생년월일		
신고 항목	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	
	휴업				
	폐업				
	영업재개				
신고 사유					
신고증 분실·훼손 사유		※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			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([]휴업 []폐업 []영업재개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(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하며,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※ 폐업신고의 경우에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

→

접수

→

검토

→

신고 수리

신고인

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